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9월 3일

나. 발 의 자 : 정선희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9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9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 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기영)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 을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
----------	-----

발의연월일 : 2013년 8월 일

발 의 자 : 정선희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 조례 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안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를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법 제61조에 따라 폐회중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원이었던 자”를 ““유족”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으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14일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과 위원 4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 1인”을 “국、과장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 의 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p> <p>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제35조에 따라 ----- ----- 한다) ----- ----- ----- ----- -----.</p> <p>제2조(정의) ----- -----.</p> <p>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법 제61조에 따라 폐회중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 ----- ----- -----.</p> <p>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3. “유족”이라 함은 의회의
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
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
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
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
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
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
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

3. “유족”이란 -----
----- 사람-----

----- 사
람을 -----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각 호-----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각 호-----
--. <후단 삭제>

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 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 라

1. -----

해당 연도 -----

2. -----
----- 해당 연도 -----

3. 그 밖에 -----
----- . -----

----- .

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장애” 란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만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장애등급-----

② ----- “상해”
란 -----
----- 14일
이상-----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에 -----
----- 해당 의원 -----

② -----
----- 6월 이내-----
----- 30일 이내 -----
----- 6월 이내에 ----- 각 호의
----- 제1호 서식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구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계좌-----.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회의 구성) 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

②----- 1명과 위원 4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1명
2. ----- 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

협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구 소
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
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

-----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

-----.

제10조(심의회 기능)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 . 다만 공무원과 의
회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
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영등포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
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소집하고,
-----.

②-----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현행
과 같음)

②----- 영등포구소속 공무원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 그 밖에 -----
-----.